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 (주)코어비트 판결을 중심으로

이상훈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 (주)코어비트 판결을 중심으로

이상훈 (변호사)

본 보고서는 2010 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주)코어비트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 심, 2 심, 3 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회사의 일상 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 사외이사의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 소송에서의 사외이사 책임의 한계를 다룬 판례는 드물다. 그러나 비상근 이사도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계속되어 왔다. 분식회계소송에서도 하급심에서는 사외이사들은 비상근 여부나 보수 여부나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임무 수행 여부는 책임 인정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왔다. 코어비트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들어가며

지난 1 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분식회계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보도하였다. 기사의 제목은, <<"직무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대법 첫 판결>>, <<大法, '명목상' 사외이사도 분식회계 책임>>,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 판결..."모든 기업에 적용하긴 곤란">>, <<게으른 사외이사, 분식회계에 책임" 대법원 첫 판결 판결>>, <<무심코 한 4 개월 사외이사, 손배소 큰코>> 등으로 다양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위 판결은 2010 년 2 월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코어비트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다. 대상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만 보면, 넓게는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외이사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의미를 확장하는 기사로부터, 좁게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사건으로서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미를 축소하는 기사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상판결의 1 심, 2 심, 3 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 사회적 파장을 예측해 보려고 하고, 이를 위하여 우선 회사의 일상 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 사외이사에 대하여도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근거에 따라 대상판결 이전

에 법원의 판결은 어떠하였는지도 차례로 살펴본다.

분식회계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 근거

주주나 채권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2 조이다. 이 법률에서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당시의 이사들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이사에는 사내 이사와 사외이사 모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이사들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2 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 159 조제 1 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 다 81981 판결

분식회계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론상 근거

그 밖에 사외이사가 회계업무에 일상적으로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론상 근거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다. 상법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상법 제 382 조 2 항, 민법 681 조). 이사의 주의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업상의 판단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신중하게 할 주의의무와 둘째는 다른 이사들의 업무수행을 잘 감시할 주의의무이다.

회사의 분식회계의 경우 사외이사는 재무제표를 최종 승인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작위적 주의의무 위반의 성격도 있지만, 그보다는 회사의 회계시스템에서 분식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감시하여 방지하지 못했다는 감시의무 위반의 성격이 더 강하다.

다른 이사들의 업무수행을 잘 감시할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비상근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²고 보고 있고, 유사한 취지의 판례가 다수 있다.

이를 기초로 법원은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³라고 함으로써, 반대 해석상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는

²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 다 51471 판결

³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 다 31518 판결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시의무를 완화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사외이사도 설사 비상근이더라도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다만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 이사보다는 주의의무는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 완화 논의들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나 또는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 399 조 제 1 항), 이사회결의에 참여하여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연대책임을 지도록(상법 제 399 조 제 2 항, 제 3 항)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부담에서는 법문언 상 사내이사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을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사의 책임 완화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과 별도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사외이사 책임면제·완화의 논거들로는 ①회사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상근이사가 장악하고 있어 상근이사의 전횡을 견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가 충분히 없는데도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②사외이사가 받는 대가가 사내이사보다 적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가에 비하여 책임이 과중하며 ③원칙대로 엄격하게 하면 책임추궁을 두려워하는 사외이사들이 취임을 기피하여 유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①우리 상법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사외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②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사외이사는 반대의견을 의사록에 기재하게 하고 기명날인 하게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③상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엄격한 책임 추궁이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사외이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된다는 반론이 있다⁴.

이 밖에 미국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임원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

⁴ 사외이사 책임면제·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영균, 기업법연구 제 21 권 제 2 호, 120 쪽

추궁 사례나 이에 기초한 임원손해배상책임보험 이용 사례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이 주장은 아직은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대상판결 전까지 분식회계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

일부 언론에서는 대상판결이 분식회계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묻은 하급심 판결은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에서 1 심 법원은 “비상근 사외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령 내지 정관상의 규정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책임 비율을 다른 사내이사보다 적게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1 심 판결 후 원고들과 사외이사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만 대법원까지 재판이 계속되었다.

또 다른 엑사이언시 분식회계소송에서도 1 심 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는 사외이사 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될 뿐, 위 피고들이 이사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유지되어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 서울중앙지법 2005. 1. 13. 선고 2000 가합 78858, 2000 가합 85856(병합) 판결(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

피고 이 00, 피고 석 00 은, 피고 대우전자의 사외이사들로서 회계에 문외한 일뿐만 아니라 회사에 상근하지도 않고,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수 조원에 이르는 피고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법상 재무제표는 이사회가 승인할 의무가 있고,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각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 이사들의 경우에도 가사 자신들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이사로서의 상

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이 00, 피고 석 00 의 경우, 위 피고들이 전문경영인이 아닌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령 내지 정관상의 규정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사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사내이사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 , 사외이사인 피고 이 00, 피고 석 00 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각 제한함이 적정하고 공평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1 가합 83917 판결5(엑사이언시 분식회계소송)

피고 김 00 은 사외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도 않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는 피고 구 00 의 지시하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소집된 적이 없어 피고 김 00, 박 00, 이 00, 김 00 이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상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이사의 의무는 사외이사 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될 뿐, 위 피고들이 이사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⁵ 항소심: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 나 74474 판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인 대상판결(코어비트 사건)

사실관계

코어비트는 1993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1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이었다. 코어비트는 2009년에 즐기세포치료제업체 FCB 파미셀을 우회상장시키면서 당시 바이오 테마를 주도한 회사로서, 그 과정에서 유명 여자탤런트의 남편이 깊숙히 관여되어 구속 수감되면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코어비트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한 비상장사 주식 55만주를 17억 60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는 이 주식을 110억 원에 산 것처럼 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기재하였고, 그 밖에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을 허위 계상하고 영업권의 가치도 부풀려 계상하였다.

코어비트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총 15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적발되어 2010년 2월 코어비트는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었는데, 코어비트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2010년 당시 코어비트의 자본금은 140억여원인 반면 코어비트의 분식규모는 총 150억여원일 정도로 분식규모가 상당하였다.

이에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상장폐지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코어비트는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재무제표들이 분식작성 됐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박모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이사들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2심 간의 엇갈린 판결

제 1 심: 서울중앙지법 2012. 10. 12. 선고 2011 가합 1823 판결(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

제 2 심: 서울고법 2013. 8. 21. 선고 2013 나 5376 판결(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소송에서 문제되는 보고서는 코어비트의 16기(2008. 1. 1. - 12. 31) 사업보고서와 17기 반기보고서(2009. 1. 1. - 6. 30.)였다.

소송에서 피고인 이사들 중 사외이사는 2 명으로서, 대상판결에서의 윤모씨(재임기간 2008. 12.~2009. 4.)와 또 다른 사외이사 A(재임기간 2009. 5.~2009. 10.)가 있었다.

우선 사외이사 A의 재임기간 중 공시된 보고서는 17 기 반기보고서만 있는데, 사외이사 A에 대해서는 제 1 심 법원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을 부정하였다(확정).

※ 제 1 심 판시 이유

17 기 반기보고서는 최초 제 16 기 재무제표에 계상된 허위 공시사항들을 대부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데, 제 16 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인 안진 회계법인의 감사까지 거친 것이어서 사외이사 A로서는 17 기 반기보고서의 기재 내용들이 허위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사외이사는 윤씨이다. 의사인 윤씨는 특이하게 2009 년 1 월에 일시적으로 코어비트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기도 한 주주인 사외이사이었다. 그러나 윤씨가 코어비트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윤씨에 대해서 1 심에서는 또 다른 사외이사 A와 달리 책임을 인정하였고, 2 심에서는 책임을 부정하여 서로 엇갈려 판단하였다.

1 심에서 윤씨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적 근거는 2009 년 4 월 윤씨가 코어비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한 후 코어비트의 실제 회장으로 알려진 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었다. 이메일에서는 “코어비트 때문에 회계팀과 미팅을 가져본 결과 그것은 분식회계의 일종이라고 이는 앞으로 심사대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악성 회계자료라고 나에게 신신당부하였다.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코어비트의 매각을 적극 주장한다. M&A지분은 가장 비싸게 받을 때 파는 것이다. 분식회계로 늘어난 자산은 종이짜이다.”라고 기재하고 있었다.

1 심에서는 위 이메일 내용을 주된 근거로 윤씨가 16 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될 당시 사업보고서가 분식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 심에서는 위 이메일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였다. 즉 위 이메일에서의 분식회계란, 이메일 발송 이전에 코어비트에 발생한 분식회계가 아니라 코어비트가 추진하려는 다른 기업 인수과정에서 코어비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식회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1 심과 달리 이메일의 의미를 축소하였다.

여기에 2 심에서는 윤씨가 단기간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의도하지 않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순 투자자의 지위이며, 그래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윤씨가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과 관련이 없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더라도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대법원 판결

제 1,2 심 판결이 서로 엇갈린 상황에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윤씨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 윤씨가 그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아님은 물론이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2 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 다 76253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 등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피고 A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고, 위 사정과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고 A이 그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아님은 물론이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되지 아니한다.

마치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식회계를 이유로 한 소송이 많지 않다. 여기에 실무상으로도 원고측 대리인이 특별히 사외이사의 변제 자력이나 책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면책 항변 여지가 높은 사외이사까지 피고로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분식회계 소송에 또 하나의 논점을 추가시켜 재판을 장기화할 유인이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로 분식회계 소송에서의 사외이사 책임의 한계를 다룬 판례는 드물다.

그러나 비상근 이사도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계속되어 왔다. 분식회계소송에서도 하급심에서는 사외이사들은 비상근 여부나 보수 여부나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임무 수행 여부는 책임 인정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제 3 자가 보기에 도원심 판결인 2 심에서 이메일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 사외이사 윤씨가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1 심과 달리 책임을 부정하는 판단을 하자, 대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법리적으로 전환점이 되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종전 판결의 취지를 계속 유지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 대하여 많은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그만큼 사외이사라는 지위가 일반인들에게는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손만 드는 거수기역할을 하는 형식적인 자리로 각인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